# [서비스에이스 협력사 ESG 행동규범]

서비스에이스는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이하 '행동 규범)을 제정하였으며, UNGC 원칙과 OECD MINE 가이드라인, GeSi의 JAC(Joint Audit Cooperation)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행동규범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서비스에이스와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사에게 적용됩니다.

## 1. 노동/인권경영

## 1.1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의 모든 근로 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협력사 또는 인력 파견회사는 근로자에게 수수료(예: 취업알선 등) 또는 보증금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 1.2 아동노동 금지

아동노동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1.3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초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 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4 임금/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관련 법으로 정해진 사회보험(예: 4대 보험 등) 및 복리후생 항목 등을 포함해야 하며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 1.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강압, 괴롭힘이나 불법적인 차별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1.6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 2. 보건/안전경영

## 2.1 산업안전

협력사는 근로자가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 2.2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여 통제하고,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 2.3 위생과 보건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회사 내 근무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 3. 환경경영

## 3.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필요할 경우 전사업장에 요구되는 환경 관련 인증 및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3.2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효율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 효율화 및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온실가스 배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을 관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및 배출해야 합니다.

## 3.3 오염방지 및 폐기물 절감

협력사는 폐기 배출물 절감 및 재활용 증진을 위한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3.4 자원사용 효율화

협력사는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 및 친환경 구매 등 자원 사용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5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

협력사는 자연 생태계 보호 관련 생물다양성 보존 및 산림 파괴, 토양 오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하며, 생물 다양성과 토지 보호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4. 윤리경영

## 4.1 사업 청렴성

협력사는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서비스에이스 임직원에게 어떠한 금품, 접대, 편의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비스에이스 임직원이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접대, 편의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SK텔레콤㈜ 윤리상담센터(https://ethics.sk.co.kr, Fax: 02-2121-1959)에 신고합니다.

## 4.2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및 거래 등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 4.3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거래관계를 통해 알게 된 경영정보를 사전승인 없이 다른 거래에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습니다.

#### 4.4 내부고발자 보호

협력사는 구성원이 비윤리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보유하고,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 4.5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근로자가 인권, 안전, 환경, 윤리 분야의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알게 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 기준과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을 촉진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근로자가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험, 보복, 조롱등의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5. ESG 진단 및 커뮤니케이션

협력사의 ESG 행동규범 준수 확인을 위하여 서비스에이스는 ESG 정기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행동규범 준수 인증을 위하여 현장방문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증 과정에서 협력사는 서비스에이스가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방문 검증을 통해 협력사의 ESG 개선 필요사항이 발견될 경우에 소정의 기간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